#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31

발의연월일: 2022. 9. 13.

발 의 자: 조은희·김선교·김홍걸

박정하 • 배준영 • 서일준

서정숙 • 유상범 • 이명수

지성호 · 최영희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아이돌 봄서비스 비용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시스템 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정보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정보시스템을 마련하여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편의성,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및 안 제35조제1항 신설).

#### 법률 제 호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여성가족 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 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만 1 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수집·보유·이용·제공·연계할 수 있다.
- 1. 제6조 및 제32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에 관한 정보
- 2. 제10조의3에 따른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정보
- 3.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정보

- 4.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 운영에 관한 정보
- 5.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관 한 정보
- 6. 제18조의2에 따른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에 관한 정보
- 7.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에 관한 정보
- 8.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에 관한 정보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및 육아도우미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와 육아도우미 관련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 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단체와 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통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ㆍ정보

- 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련 업무에 필 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 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⑦ 통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사회 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 산망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하여 관리·이용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⑩ 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25조(비용 지원 업무의 전자화) 제25조(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의 업 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 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에 따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 용할 수 있다.

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 비스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 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만 14세 미만 미성년 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을 말한다)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수집 · 보유 · 이용 · 제공 •연계할 수 있다.
- 1. 제6조 및 제32조에 따른 아 이돌보미 결격사유 및 자격정 지 등에 관한 정보

- 2. 제10조의3에 따른 아이돌봄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정보
- 3.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정보
- 4.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 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정보
- 5.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
- 6. 제18조의2에 따른 아이돌보 미 만족도 조사에 관한 정보
- 7.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에 관한 정보
- 8.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에 관한 정보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및 육아도 우미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 위에서 이를 수집 · 보유 · 이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 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 서비스와 육아도우미 관련 효 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 는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단체와 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통 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 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 이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 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 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

- 기관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

   위에서만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 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 다.
- ① 통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 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을 연계하여 운 영할 수 있다.
-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통합정보시스템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하여 관리·이용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정보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벌칙) <u>()</u>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자 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 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